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4
----------	------

2017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2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광빈 국장)

가. 제안이유

-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인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한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한 법인만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어 이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개모집을 배제한 준용규정의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평가제외)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평가제외)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2) 입법예고(2016.11.17. ~12.7.) 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매립 종료 후 발생하는 매립가스, 침출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임.
- 동 조례 제3조제2호에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는 제3조제2호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에는 제2호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시가 출자한 법인 외에도 제1호, 제3호, 제4호에 위탁운영 가능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바, 제5조의 단서조항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나. 검토의견

1) 매립가스 포집 시설 개요

-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으로, 매립이 중지된 이후에는 2002년 월드컵과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5개의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본 공원을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 2개의 쓰레기 더미를 복토하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음.
- 현재 매립가스 처리를 위해 106개의 포집공(노을공원 58공, 하늘공원 48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제시설 2기, 소각기 2기, 중앙제어실 등의 처리시설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설치되어 있음.

2) 침출수 및 매립가스 포집 시설의 운영

-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지 주변 31개소에서 집수한 침출수를 침출수 처리장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도록 계획 하였으나, 수질 분석결과 당초 계획한 수질농도 중 질소성분만 방류 허용기준치를 상회하고 그 밖의 성분은 「폐기물 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침출수처리장 가동 없이도 방류가 가능하여 2003년 7월부터는 물리·화학적 처리를 중단하고, 집수정에서 양수한 침출수를 난지물재생센터로 이송하여 생활하수와 병합처리하고 있음.
- **매립가스 포집시설**은 2001년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이후 위탁운영 하고 있음.
- 매립가스 처리시설은 3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며,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최근계약: 2017.2.1~2020.1.31)

3)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2016년 8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였으며, 10월부터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 적격자를 선정 하였음.
- 현재 난지도 매립가스 처리시설은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계약이 완료되었음.

4) 차별사유 제거를 위한 조례 정비

- 동 조례 제3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인 등
2.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3.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그러나 동조례 제5조(준용규정)에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지방공기업 또는 서울시가 출자한 법인)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에 차별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삭제>